경제관계장관회의 겸
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
(12.24)

고령화에도 지속 가능한
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

M&A를 통한

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

2025. 12. 24

중소벤처기업부

M&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(요약)

Ⅰ. 추진 배경

□ 고령 CEO 중소기업 승계 문제는 우리경제 잠재 리스크

○ 중소기업 중 **후계자 부재**로 지속경영을 담보할 수 없는 **중소기업 약 67.5만개사***(제조업 한정시 5.6만개사)

*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 추정(자본시장연구원 추정치 활용, '22년 기준)
↳ 60세 이상 CEO 중소기업(236만개사) × 후계자 부재율 추정치(28.6%)

⇨ 승계 실패 중소기업의 폐업 증가 시, **▲고용충격, ▲지역경제 위축** 등 **우리경제**에 **큰 부담으로 작용**할 우려

□ 그 간의 **기업승계 정책**은 **친족 승계**(家業승계 세제지원) 중심

○ **▲자녀 부재, ▲당사자 기피** 등 **친족승계**의 **필연적 한계**가 발생하는 가운데, M&A를 통한 제3자 승계가 대안으로 주목

○ **기업승계 M&A 수요**는 **21만개 수준**으로 추정(자본硏, '22년기준) 되며, **향후 10년간 연평균 2.84%**로 **증가 전망** → '34년 31만개 수준

⇨ **친족승계**의 **근본적 한계**를 **극복**하고, **M&A 방식 제3자 기업승계 수요**에 **대응**하기 위한 **정책 보완**이 필요

□ 일본은 M&A로 CEO 고령화에 따른 **승계 리스크 효과적 대응**

○ **일본은 '07년 초고령 사회**(65세 이상 20%↑) **진입 후, 휴폐업 수**가 **급증***(흑자 폐업률도 60% 상회)하면서, **경제·산업**에 **부담**

* ('00) 16,110개사 → ('07) 21,122개사 → ('11) 25,273개사 → ('16) 29,583개사

○ 이에 일본은 M&A형 기업승계 정책(별도법 제정 등)을 추진하여, **▲CEO 연령대 하향***, **▲흑자 폐업률 감소**** 등 성과 도출

* **가장 많이 분포하는 경영자 연령 :** ('15년) 59~65세 → ('23년) 55~59세
** **흑자 폐업률 :** ('16) 64% → ('23) 52.4% ('16년 대비 11.6%p 감소)

⇨ 우리보다 **먼저 고령화**를 겪은 **일본**의 **기업승계 정책**(M&A 활성화) 및 **성과**를 면밀히 **참고**하여 정책을 준비

Ⅱ. M&A형 기업승계 장애요인 진단

□ **(장애❶) 기업승계 M&A에 특화된 법률 체계 부재**

○ 기존 중소기업 관련 M&A 법규정은 ▲벤처 투자회수 활성화 ▲기술거래, ▲사업전환 등 특정 정책 목적에 국한

□ **(장애❷) 중소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M&A 중개시장 미성숙**

○ ▲정보 비대칭 및 플랫폼 부재, ▲중개·자문 업자에 대한 신뢰형성 부족

□ **(장애❸) 중소기업에게 비효율적인 M&A 절차**

○ 중소기업은 주주구성이 소수이고 단순하여 상법 절차·요건 및 기간을 모두 준수하게 하는 것은 절차지연 요인

□ **(장애❹) M&A 단계별 비용이 상당하나, 특화지원 미흡**

○ ▲M&A 준비(컨설팅 등) - ▲M&A 진행(기업가치평가, 실사, 수수료 등)- ▲M&A 후(통합 절차, 시설투자 등) 全 과정에 걸친 유기적 지원 필요

Ⅲ. 핵심 추진과제

◇ **기업승계 M&A 활성화 정책 추진**의 기반이 될 **특별법*** **제정** 추진

*** (가칭) 인수·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**

□ **(추진과제❶) 기업승계 정책 추진의 법적기반 확립**

○ ▲정의체계(M&A형 승계, 家業승계) ▲지원대상(경영자 연령 등), ▲지원제외(상장사 등) ▲사후관리(승계후 성장지원 연동) ▲지원인프라 등

□ **(추진과제❷)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&A 시장 조성**

○ ▲플랫폼 구축(진성 수요 선별·관리), ▲중개기관 등록제(요건 등) 도입

□ **(추진과제❸) 기업승계 M&A 친화적인 제도 환경 조성**

○ ▲상법의 M&A 절차 간소화 특례 도입, ▲부동산 등기 특례 등

□ **(추진과제❹) 기업승계 활성화 및 승계후 성장지원 근거**

○ ▲기업승계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운영, ▲M&A 수수료 등 비용보조, ▲정책금융 우대 근거, ▲성장사업, ▲기업승계활성화 계정 설치 등

Ⅳ. 추진일정

□ **특별법 발의**('25.12월) → **공청회**('26.1Q) → **입법완료**(~'26.상)

순 서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M&A형 기업승계 장애요인 진단 ····· 5

Ⅲ. 핵심 추진과제 ····· 8

Ⅳ. 향후 추진일정 ····· 13

Ⅰ. 추진 배경

◈ 中企 CEO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는 우리경제 잠재 리스크

□ **인구 고령화 추세** 속, 중소기업 **CEO 고령화**는 **더 빠르게 진행**

○ **제조 中企 CEO 중 60세 이상 비중**은 전체 인구중 60세이상 비중보다 **가파르게 증가**

* 10년('12~'23)간 60세이상 인구 비중 변화

↳ 전체 인구(10.7%p 증가)

vs. **제조 中企 CEO(22.7%p 증가)**

<60세 이상 인구 비중(%)>



○ 최근 5년간('19~23) **제조 중소기업 수**를 **CEO 연령대별**로 살펴보면, **'60대 이상'만 유일하게 증가** → 중소기업 **고령화 추세 확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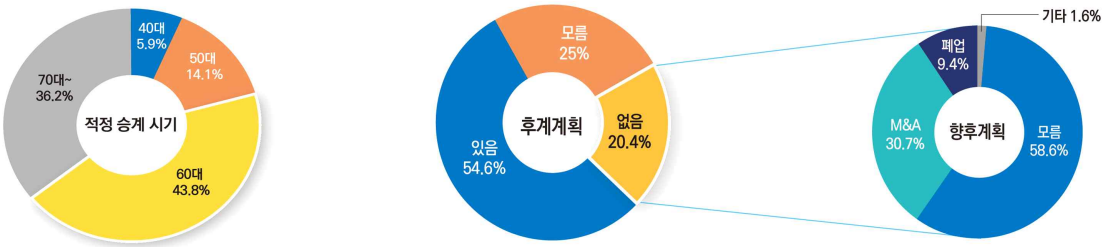
<제조 중소기업 CEO 연령대별 증감('19~'23, CAGR)>

구분	전체	30대 미만	30대	40대	50대	60대 이상	연령 미상
연평균 증가율(%)	1.6	-0.9	-1.7	-3.0	-1.1	**11.2**	-14.4

□ 대다수 중소기업 CEO는 **60대 이상**을 **기업승계 적정시기**로 **인식**하나, 상당수는 구체적 후계계획이 없는 등 **승계준비**는 **미흡**

○ CEO 설문에 의하면, **후계계획**에 대해 **▲모름**(25%), **▲없음**(20.4%) 응답이 상당하고, 후계계획 없는 기업 중 **일부는 폐업까지도 고려**

<60세 이상 CEO 후계 인식 및 대응(중기연 설문, '24.7월)>



□ **60세 이상 CEO 중소기업**은 **약 236만개사**('22년 기준)이고, **이 중 28.6%**인 **67.5만개사**가 **후계자 부재**로 지속경영 담보 곤란

○ 고용효과가 큰 **제조업**으로 **한정시** 약 **5.6만개사**의 **후계자 부재**가 추정되고, **이 중 83%인 4.6만여개사**가 **서울 外 지역**에 **소재**

⇨ 신속한 대응이 없으면 이들 **기업의 폐업 증가**로 인해 **▲고용충격**, **▲지역경제 위축** 등 문제가 확산될 수 있는 **리스크 잠복**

〈 참고 :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 지역별 추정현황 상세〉

◇ **추정 체계(자본시장연구원)**

▶ **(중소기업수)** 중소기업 기본통계('22년 기준) 활용

* 60세 이상 CEO 중소기업 비중 : 全업종 평균 29.38% / 제조업 평균 31.23%

▶ **(후계자 부재율)** 日 후계자 부재율 실제로 조사('11~) → 상관변수 도출(경제규모, 인구밀도 등) → 한국 통계('22년 기준) 적용으로 우리나라 中企 후계자부재율 도출

◇ (全업종 기준) 중소기업 후계자 부재 추정

지역	중소기업수		후계 부재율	후계 부재기업	
	전체	60세 이상		기업수	지역분포
서울	1,666,401	489,589	36.1%	176,741	26.2%
경기	2,110,760	620,141	27.2%	168,678	25.0%
인천	429,618	126,222	29.2%	36,857	5.5%
충북	239,131	70,257	25.2%	17,705	2.6%
충남	328,214	96,429	25.6%	24,686	3.7%
대전	205,290	60,314	27%	16,285	2.4%
세종	45,293	13,307	28.3%	3,766	0.6%
전북	283,568	83,312	24.8%	20,661	3.1%
전남	294,743	86,595	24.4%	21,129	3.1%
광주	205,262	60,306	28.1%	16,946	2.5%
강원	242,846	71,348	24.4%	17,409	2.6%
대구	344,260	101,144	28%	28,320	4.2%
경북	398,850	117,182	24.1%	28,241	4.2%
경남	482,366	141,719	25.1%	35,572	5.3%
부산	493,459	144,978	27.9%	40,449	6.0%
울산	141,974	41,712	25%	10,428	1.5%
제주	130,691	38,397	25.1%	9,638	1.4%
합계	8,042,726	2,362,953	28.6%	675,805	100.0%

◇ (제조업 기준) 중소기업 후계자 부재 추정

지역	중소기업수(제조업)		후계 부재율	후계 부재기업	
	전체	60세 이상		기업수	지역분포
서울	84,745	26,466	36.1%	9,554	17.0%
경기	202,947	63,380	27.2%	17,239	30.6%
인천	36,533	11,409	29.2%	3,332	5.9%
충북	20,448	6,386	25.2%	1,609	2.9%
충남	26,520	8,282	25.6%	2,120	3.8%
대전	12,052	3,764	27%	1,016	1.8%
세종	2,046	639	28.3%	181	0.3%
전북	17,533	5,476	24.8%	1,358	2.4%
전남	19,273	6,019	24.4%	1,469	2.6%
광주	12,450	3,888	28.1%	1,093	1.9%
강원	11,348	3,544	24.4%	865	1.5%
대구	34,565	10,795	28%	3,023	5.4%
경북	41,034	12,815	24.1%	3,088	5.5%
경남	53,596	16,738	25.1%	4,201	7.5%
부산	40,126	12,531	27.9%	3,496	6.2%
울산	10,950	3,420	25%	855	1.5%
제주	4,200	1,312	25.1%	329	0.6%
합계	630,366	196,863	28.6%	56,303	100.0%

◈ 친족승계에 머물러 있는 정책 ⇒ M&A形 제3자 승계정책 보완 필요

□ **정부**는 상속·증여방식 **친족승계**에 **초점**을 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, **핵심 수단**은 家業승계 **조세 지원**(가업상속공제, 증여세특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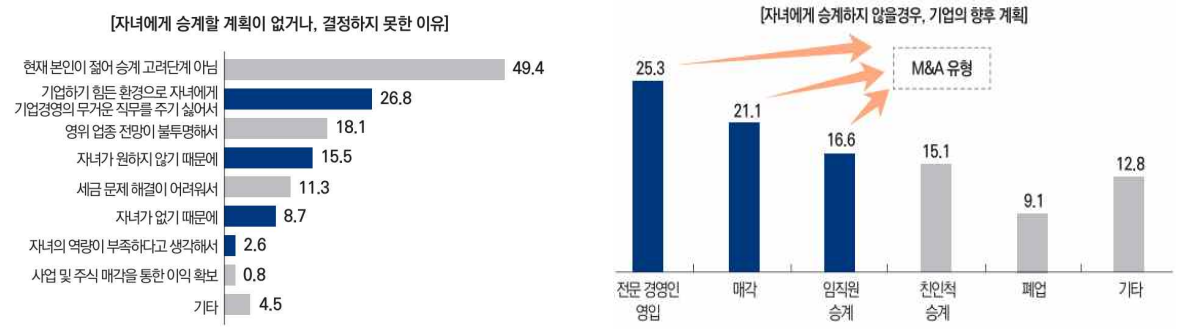
○ **家業승계 지원 세제**는 최근 **지원**이 **확대***되고 있고, **제도 활용**도 **증가 추세**를 보이는 등 **친족승계 활성화**를 위한 **토대**는 마련

* 상속공제 한도 : 【'12】 300억원 → 【'14】 500억원 → 【'23】 600 억원
증여세 저세율<10%> 한도 : 【'15】 30억원 → 【'23】 60억원 → 【'24】 120억원

□ 그러나, **▲당사자 승계 기피**, **▲자녀 부재** 등 친족승계가 곤란한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 → **현행 家業승계** 지원만으로 **한계**

○ 자녀승계 계획 없을 경우 **▲전문경영인 영입***, **▲매각**, **▲임직원 승계*** 등 **M&A 유형**을 **대안**으로 **모색**

* ▲전문경영인 영입, ▲임직원 승계는 결국에는 친족 외 제3자에게 기업의 지분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M&A를 통한 기업승계 수요로 고려 가능



※ 기업승계 실태조사(중소기업 중앙회 설문, '25.5월)

□ 고령 CEO **중소기업 M&A 수요***는 **21만개 수준**으로 추정되며, 향후 10년간 **연평균 2.84% 증가**하여 **'34년 31만개 수준** 전망(자본硏)

○ 고용효과가 큰 **중소기업**으로 **한정**(소상공인 제외) 시, **1.3만개사**(26만명 고용=1.3×20명<中企 평균고용>) 이상 M&A 수요 잠재

☞ 기업승계 M&A 수요(자본연, '22년 기준) : 약 21만개(소상공인 제외시 1.3만개)
↳ 60세 이상 중소기업 수 x 후계자 부재율(28.6%) x M&A 희망 비율(설문 30.7%)

⇨ **친족승계**의 **근본적 한계**를 **극복**하고, **M&A 방식**의 **제3자 기업 승계 수요**에 **대응**하기 위한 **정책 보완**이 필요한 시기

◈ 일본은 M&A 활성화로 고령화 시대 기업승계 리스크에 효과적 대응

□ **일본**의 경우 '07년 **초고령 사회**(65세 이상 20% ↑) **진입 후, 휴폐업 수**가 **급증***(흑자 폐업률도 60% 상회)하면서, **경제·산업**에 **부담**

* 일본 중소기업 휴폐업 추이(도쿄상공리서치, 東京商工リサーチ)

↳ ('00) 16,110개사 → ('07) 21,122개사 → ('11) 25,273개사 → ('16) 29,583개사

○ **10년 먼저 고령화**를 겪고 있는 **일본**은 **높은 제조업 비중*** 등 산업구조가 **우리와 유사**한 측면 → 일본의 **정책 대응 참고**할 필요

* 주요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(%, '22년 World Bank)

↳중국(27.5), 한국(25.5), 일본(20.5), 독일(18.9), 미국(10.7), 프랑스(8.9), 영국(8.7) 등

□ **일본**은 중소기업의 **후계부재**에 대한 **대안**으로 **M&A**를 통한 **제3자 승계**에 **주목**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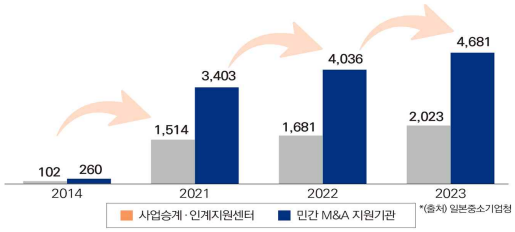
<일본의 기업승계 M&A 촉진정책 주요내용>

구분	주요 내용
경영승계원활화법	• 기업승계 지원 정책 기반(금융, 보조금, 세제지원 등)
사업인계지원센터	• 지역별 컨설팅, M&A 수요 매칭 등 정책 수요 대응 거점 운영
네트워크	• 금융기관, 기업단체 등 협업 네트워크로 기업승계 수요 발굴
중개기관 등록제	• 민간 중개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운영

○ 정책추진 결과 최근('22~)에는 **연간 4,000건 이상 M&A 성사** 등 **일본 M&A 시장 활성화 뚜렷**

* 민간 M&A(건) : ('14) 260 → ('21) 3,403 → ('22) 4,036 → ('23) 4,68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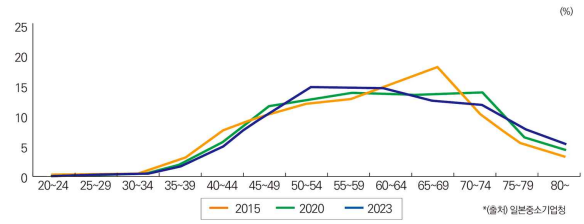
<日 중소기업 M&A 현황(건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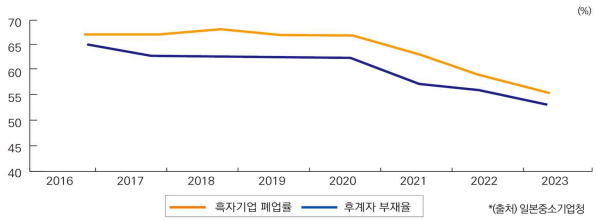
○ M&A가 활성화되면서 **▲경영자 연령대 하향***, **▲흑자 폐업률 하향**** 등 기업승계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음

* **최다 분포 연령** ('15년) 59~65세 → ('23년) 55~59세 ** **흑자 폐업률** ('16) 64% →('23) 52.4%

<日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 분포>



<日 중소기업 흑자 폐업률>



⇨ 우리보다 **먼저 고령화**를 겪은 **일본**의 **기업승계 정책**(M&A 활성화) 및 **성과**를 면밀히 **참고**하여 정책을 준비할 필요

Ⅱ. M&A형 기업승계 장애요인 진단

◈ [장애요인❶] 기업승계 M&A를 뒷받침 할 법률적 근거 부재

□ **기업승계 M&A**는 ▲고령 CEO, ▲장기간 운영 대상기업 특성이 있어 **'수요발굴→중개→승계후 성장"** 과정에 걸친 **유기적 지원체계 필요**

○ 중소기업 **M&A 관련 기존 법률규정**은 ▲벤처 촉진, ▲기술거래 촉진, ▲소상공인 사업승계 지원 ▲경영위기시 구조전환 등 **정책 대상 한정**

<중기부 소관법안 중 M&A 관련 법적 근거 현황>

법률	주요 규정	대상
벤처기업법	• 상법 특례(절차 간소화 등) • 조세 특례	벤처기업 한정
기술혁신촉진법	• 상법 특례(벤처기업법 상법 특례 인용)	이노비즈 한정
	• 기술거래·사업화(→M&A) 지원 사업 추진	기술거래 한정
소상공인법	•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지원 근거	소상공인 한정
사업전환법	• 상법 특례(합병절차 간소화, 간이합병 등)	사업전환 한정

◈ [장애요인❷] 중소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M&A 중개시장 형성 미흡

□ **(정보 특성)** 대기업 등 빅딜과 달리 **중소기업 M&A**는 매도·매수 **기업 수요 정보**가 **부족**하고, **정보**를 연결하는 **플랫폼 부족**

○ 기업의 매각추진 정보 공개시 **▲핵심인력 이탈, ▲거래관계 악영향** 등 우려가 있어 **M&A 진성 수요 파악**이 **곤란**한 현실

> 현장의 목소리 ▪ 중소 M&A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및 정보 부족(☆☆회계법인)

○ 일부 국가에서 **온라인 M&A 플랫폼***이 중개사업 모델로 확산

* 【日】 바톤즈(Batonz), 트랜비(Tranbi), M&A 석시드(M&A Succeed) 등
【美】 액시알(Axial), 플리파(Flippa), 어콰이어닷컴(Acqire.com) 등

- **최근 국내**도 **등장**하고 있으나, **내실있는 수요 정보 확보·관리** 및 **매수-매도간 정교한 매칭***이 관건이 될 전망

> 현장의 목소리 ▪ M&A 매칭은 신뢰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숨겨진 정보를 연결하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시스템에 의한 자동 매칭은 한계(☆☆회계법인)

□ **(중개 · 자문 신뢰)** 신뢰도가 높은 **회계법인·증권사·투자은행** 등은 경험이 풍부한 인력에 대한 비용 등으로 **중·대형 M&A**에 **중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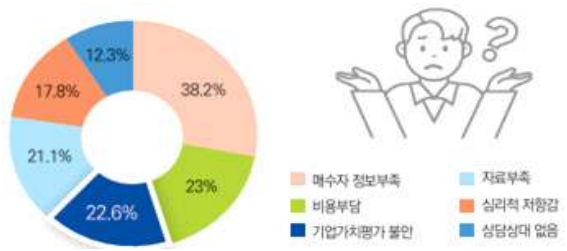
○ **소형 중개업체**(所謂 '부띠끄')의 경우, 자본시장이 고도화된 미국* 등 선진국과 달리 **시장의 신뢰**가 **부족**한 상황

* 대형 투자은행(IB)의 시니어 뱅커들이 설립한 부띠끄(800개 이상)가 대형 IB가 진출하지 않는 중소규모 M&A시장 신뢰 축적(자본시장연구원)

현장의 목소리
▪ 중개업체 신뢰도 : 신뢰할 수 있다(8.8%) vs 신뢰하기 어렵다(41.1%)
(중소기업 M&A 인식도 조사, IBK 경제연구소<'25.5월>)

○ CEO들도 M&A 의향 없는 요인으로 ▲정보부족, ▲비용부담 등과 함께 "**기업가치평가 불안**"을 꼽아,

→ **중개 신뢰도 문제 방증**



◈ (장애요인③) M&A 절차를 규율하는 제도 · 절차 비효율

□ **(M&A 과정)** **상법**의 **M&A 규율**은 **M&A 절차**를 **지연**하는 요소

○ 상법은 **M&A시** 주주총회, 계약서 공시 등 **주요 절차별**로 **최소기간**을 부여하고 있어, **M&A 활성화 걸림돌**로 지적

- 특히, **주주 수**가 **상대적**으로 **소규모***인 중소기업 M&A에 현행 상법 규정을 **일률적**으로 **적용**하는 것은 **절차 비효율 초래**

* 대주주 수 평균(KoDATA<27만개사>, 명) : 대기업 12.89 / 중기업 6.49 / 소기업 3.77

상법의 최소절차에만 3개월이상 소요



□ **(등기 절차)** M&A 후 **부동산 소재지**에서만 **등기 사무처리 인정**

○ 생산시설, 사무소 등 **부동산**이 여러지역에 **분산 소재**된 기업 **M&A**시 등기 절차에 **행정적 불편**을 초래

* 상속·유증시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등기사무 가능하도록 부동산등기법 특례를 운영하고 있으나, 기업 M&A에는 이같은 특례 규정 미비

◈ [장애요인❹] M&A 단계별 비용 발생이 상당하나, 특화된 지원은 미흡

□ **(M&A 준비)** M&A방식 기업승계에 대한 **선호도**가 **낮은 상황**에서 중소기업들은 **M&A 준비 비용**은 **부담**으로 작용

○ 기업승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들의 **저변확대**를 위한 마중물로서 **기업별 M&A 컨설팅 및 주요 소요 비용*** 지원 필요

* M&A 교섭에 필요한 소개 자료(TM, Teaser Memorandum) 제작 비용이 대표적
↳보안이 중요하고, 교섭 성패 좌우 중요자료 → 전문가 의뢰 일반적(최대 5천만원 소요)

현장의 목소리 ▪ 인수하려는 기업군에 대한 상세 정보가 없어 개인적 네트워크로 정보 및 방법을 찾다보니 많은 시간·비용 소모('25년 기업승계 M&A 사례기업 A社)

□ **(M&A 진행)** 인수자금, 중개수수료 등 **M&A 본격 진행시 수반비용 부담 완화**가 필요하나, **특화**된 **정책 프로그램 부족**

○ 정책 금융기관들이 기업승계 **인수자금 대출·보증 프로그램**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**안정적 근거** 필요

○ 인수자금 이외에도 **▲기업가치평가**(건당 최소 2천만원), **▲실사**(DD*), **▲중개수수료**(딜 가격의 2~3% 성공보수 통상적) 등 **비용발생 요인 다수**

* Due Diligence : M&A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재무,세무,법률 등 관점의 실사가 필수적
↳ 인수대상 기업 리스크를 확인·회피하는 단계로 인수자 부담이 일반적(대략 3천만원)

□ **(M&A 이후)** 승계 후 경영안착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**인수후 통합***(PMI, Post-Merger Integration), **시설개선** 등 **비용 증가**

* M&A 후 ▲업무 프로세스, ▲인사제도, ▲조직문화 등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과정

○ 특히, **AX·DX 등** 최근 급변하는 경제·산업 환경 고려시, M&A 승계 후 **지속성장**을 위한 설비개선 투자 수요 등 **증가** 예상

현장의 목소리 ▪ 20년 이상 중소기업을 M&A 방식으로 승계하였는데, 노후설비 개선 등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제2의 창업 수준 ('25년 기업승계 M&A 사례기업 A社)

Ⅲ. 핵심 추진과제

◇ 기업승계 M&A 활성화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**특별법*** 제정 추진

* (가칭) 인수·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

추진 목적 CEO 고령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 도모

추진 방향 지속 가능 중소 M&A 시장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



추진 과제

정책 기반 확립

- ☑ 정책 범주 확장(가업승계→가업+M&A형 승계)
- ☑ 승계 지원 정책 대상 명확화(경영자 연령 등)
- ☑ 지원 인프라(기업승계지원센터) 구축·운영

신뢰도 높은 M&A 시장형성

- ☑ 기업승계 M&A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
  * 등록 중개기관을 통한 M&A 진행 비용 지원
- ☑ M&A 플랫폼 구축·운영

M&A 친화적 환경 조성

- ☑ 승계 M&A 시 상법 절차 촉진 특례 도입
- ☑ 등기절차 편의 제고
- ☑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도출
  *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

기업승계 및 승계 후 성장지원

- ☑ 기업승계 M&A 정부 지원 및 예산 근거(계정 설치)
- ☑ 정책 금융 우대 근거 마련
- ☑ 모험자본 조성 및 승계 후 성장지원 추진

◈ [추진과제❶] 기업승계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기반 확립

□ **(정의 체계)** 기업승계 **정책범주**를 기존 家業승계(친족승계)에서 M&A를 통한 **제3자 승계**로까지 **확장**

○ **▲인수·합병形 승계와 ▲가업승계**(家業承繼)로 유형화하여 2가지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기업승계의 법적 정의 체계를 확립

- 기업별 상황에 따라 승계방식(M&A vs. 家業승계)이 유동적이므로, **家業승계***와 **M&A**를 **뒷받침**하는 **유기적 정책 기반 마련**

* 現 중소기업진흥법에 규정된 가업승계 지원 근거를 이관하여 특별법에 반영

<기업승계 법적 유형 체계(안)>

구분	M&A형 승계(신설)	家業승계(이관)
승계 대상	◆ 친족 外 제3자* * 동종업계 기업, 임직원, 펀드(전문경영인), 창업자 등 다양	◆ 자녀 등 친족
승계 방식	◆ ▲주식(지분) 양수도, ▲합병, 분할합병▲주식 포괄 교환·이전, ▲영업 양수도 등 M&A 방식 포괄	◆ 상속 또는 증여
現 정책 (근거 법률)	◆ 기업승계 M&A 정책 부재	◆ 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·운영 등 (중소기업진흥법)

□ **(지원 기준)** 기업승계 정책대상, 적용제외 등 **정책운영 기준** 제시

○ **(지원 대상)** 피승계기업 **▲경영자 연령, ▲경영기간** 등 대상 요건을 법률에 반영하고, **상세 기준**은 탄력적 운영을 위해 **대통령령*** **위임**

* 주요 기준(안) ▲경영자 연령 : 60세 이상, ▲경영기간 : 10년 이상

○ **(적용 제외)** **▲타 법률과의 충돌 방지, ▲정책 취지, ▲사회 통념상 지원 부적절성** 등 고려 법률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반영

구분	제외 대상(안)
타 법률 충돌 방지	■ 상장사는 일반주주 보호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우선 적용 * 제외(안) :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
정책 취지	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곤란한 부실기업은 승계지원에서 제외 * 제외(안) :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등
사회 통념	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(시행령 위임) * 제외(안) :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난 기업 등

□ **(사후 관리)** **M&A 승계 후 성장지원** 프로그램을 **고용유지** 등 일정 조건과 **연계**하여 **운영·관리**할 수 있는 **법률적 근거 확보**

* 家業승계의 경우, 현행 세법(상증세법 등)에 의해 ▲경영여부(휴·폐업 금지 등), ▲업종유지, ▲고용유지, ▲자산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 적용 중(승계 후 5년간)

<참고 : 現 가업상속공제 시 사후관리 주요내용(상증세법)>

요건	주요 관리 내용
경영 여부	■ 대표이사 취임 여부(2년내), 휴업, 폐업 여부 등
업종 유지	■ 주된 업종 변경 여부(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변경 허용)
고용 유지	■ 정규직 근로자수(90%), 총 급여액 유지(90%) 여부
자산 처분	■ 기업 상속 후 상속인의 지분 변동 여부

□ **(지원 인프라)**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**종합적 지원업무**를 수행할 **'기업승계지원센터' 지정·운영** 근거 마련

○ 「인식개선 및 수요 발굴 - 승계전략 컨설팅 - M&A 자문·중개 - 금융(자금보증 등) 및 보조금 지원」 등 **기업승계 과정 지원 수행**

○ 기업승계지원센터는 **▲공공, ▲민간**(금융기관, 협단체)을 지정·운영하여, **각각의 특·장점**을 활용할 수 있도록 **역할 분담체계** 운영

<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>

구분	지정시 주요 고려사항	지정(예시)
공공	◆ M&A 업무 전문성, 지원정책 수행 인프라 등	기술보증기금, 중진공 등
민간	◆ 중소기업과의 접점 및 기업간 네트워크 등	◆(금융) IBK 기업은행 등 ◆(단체) 중앙회, VC 협회

□ **(정책 기반)** 기업승계 **실태조사**,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**정기 기본계획 수립·시행** 등 안정적 정책추진 필요 근거 마련

○ **(실태조사)** 정책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해 기업승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공표(관계기관 협조 근거 포함)

○ **(기본계획)** ▲기업승계 관련 동향·현황·전망, ▲기업승계 지원 정책, ▲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관한 정기 기본계획 수립·시행

◈ [추진과제❷]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&A 시장 형성

□ **(플랫폼)** 기업승계 과정의 **정보 비대칭 문제**를 **해소**할 수 있는 기업승계 **M&A 중개 플랫폼**(이하 '플랫폼') 구축·운영

○ 플랫폼을 통해 **▲수요정보**(매수-매도 희망기업), **▲중개업자 정보**, **▲기업별 중개 경과** 등 기업승계 M&A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

○ ▲수요자(매수-매도 신청), ▲중개업자(등록)는 **플랫폼**에서 **필요 정보*** **탐색**

* 매도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되는 형태의 TM(Teaser Memorandum) 정보로 제공

⇒ **플랫폼 운영기관***은 진성 수요를 선별·관리하면서,
중개 계약 진전에 따른 **▲지원**(보증, 수수료 등), **▲기술보호** 등 역할 수행

* 기업승계지원센터 중 M&A 업무 전문성 등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

※ 특별법 시행 前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업승계 M&A 플랫폼 구축 예정(~'26.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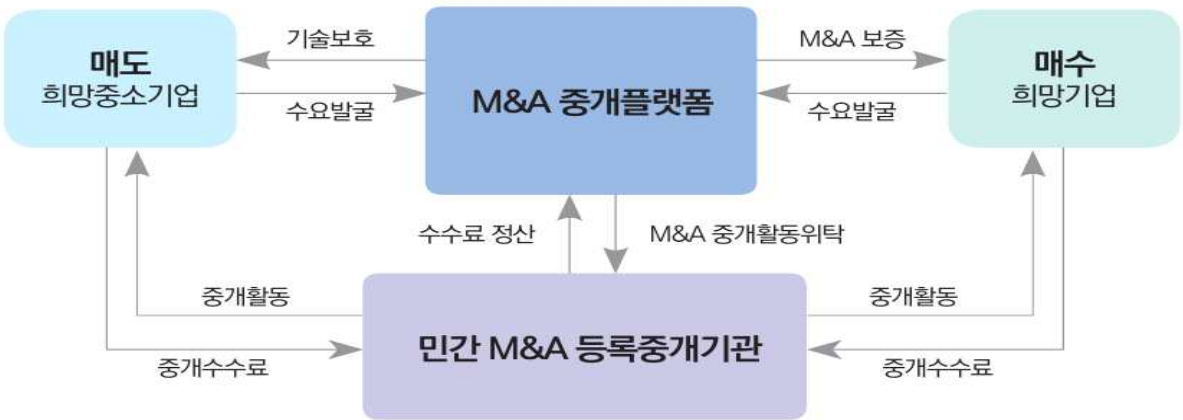
□ **(중개기관 등록제)** 중소 M&A **중개시장 형성**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승계 **M&A 중개기관**(이하 '등록 중개기관') **등록제** 도입

○ **자문·중개 역량**을 **담보**할 수 있는 **최소한의 등록요건***을 운영하고, **'등록 중개기관'**은 플랫폼 활용으로 **수요탐색** 및 **중개영업 가능**

* ▲M&A 전문인력(회계사 등) 보유, ▲자문·중개 실적, ▲ 재무상태(자기자본, 매출 등)

○ **"내실 있는 중개기관 유입 ⇔ M&A 성사 증가"**의 선순환 촉진을 위해 **'등록 중개기관'**을 통한 **M&A**로 **정부 지원대상 한정**

기업승계 M&A 플랫폼 및 중개기관 협업체계 구축·운영



◈ [추진과제③] 기업승계 M&A 친화적인 환경 조성

□ **(절차)** 상법상 **M&A 주요절차 요건**을 **완화**하는 특례 신설

○ ▲주주총회, ▲계약서 공시, ▲채권자 보호, ▲소재불명 주주요건* 등 **주요절차**에 대한 **법정 최소기간 단축**

* (현행) 3년 이상 소재불명인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절차 진행 가능

○ **소규모 합병특례*** 요건을 특별법에 의한 **기업승계 M&A시에는 완화**

*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로 갈음 가능(상법 제527조의3 등)

○ **소규모 영업 양도**(자산의 10% 미만) 시 **주주총회**를 **이사회**로 갈음

* (현행)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,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등 행위를 할 때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(상법 제374조)

○ **주식매수청구권**의 **행사시기**를 앞당겨 절차를 촉진하고, **청구권 행사후 매수 기간**을 확대하여 기업의 **유동성 부담 완화**

<기업승계 M&A시 상법 특례 도입(안)>

구분		특례 주요내용
절차 단축	주주총회	•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 완화(2주전 → 7일전)
	계약서 공시	• 기간 단축(<주총 2주전~합병후 6개월> →<7일전~6개월>)
	채권자 보호	• 이의제기 기간 단축<1개월 이상 → 10일>
	소재불명 주주	• 소재불명 기간(현재 3년) 단축
소규모합병		• 소규모 합병요건 완화<소멸회사 주식총수 10% → 20%>
소규모 영업 양수·도		• 소규모 영업(자산 10% 미만) 양도절차 완화(주주총회→ 이사회 승인)
주식매수청구권		• (청구) 기간 단축<20일→10일> • (매수) 청구후 2개월 → 6개월

□ **(등기)** 기업승계 M&A 시 **승계자산 소재지 등기사무 허용**

○ **상속·유증 시** 부동산 등기사무 관할에 준하는 내용의 **특례 신설**

□ **(인센티브)** 기업승계 M&A 수요를 촉진할 수 있도록 **다양한 인센티브 방안**을 **중소기업계·전문가 의견**을 **수렴**하여 모색

현장의 목소리

▪ 기업승계 M&A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절차·행정적 사항 뿐 아니라 ▲자금 조달 ▲리스크(우발채무 등), ▲세금 등 다양한 요소 고려 필요 (☆☆회계법인)

◈ [추진과제❹] 기업승계 활성화 및 승계 후 성장을 위한 지원

□ ▲기업승계지원센터 및 플랫폼 운영, ▲M&A 비용보조, ▲정책금융 우대, ▲성장사업, ▲기업승계활성화 설치 등 안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

<기업승계 지원에 관한 주요 근거 규정(특별법 반영)>

구분	주요 내용(지원 근거 입법)
 인프라 운영	•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·운영 및 통합플랫폼 구축·운영 비용 지원
 준비·탐색	• 기업승계 M&A 수요 기업에 대한 초기비용(컨설팅 등) 지원
 M&A 중개과정	• M&A 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→ 수수료 및 제반 비용 보조 • 보증 우대(기술보증기금·신용보증기금), 자금우대(중진공) 등 • 국가·지자체 운영 융자·투자·보조금 등 우대 근거 운영
 M&A 후 성장지원	• 기업승계 후 지속성장 지원(경영·재무 자문 등) 근거

Ⅳ. 향후 추진일정

□ **특별법 발의**(~'25.12월) → **공청회**('26.1Q) → **입법완료**(~'26.상)

○ 기업승계지원센터 및 플랫폼 시범 구축은 특별법 제정 前 착수

정책 과제	일 정	비고
1. (가칭)인수·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		
▸ 법안 발의	'25.12월	국회
▸ 공청회	'26.1Q	국회·중기부
▸ 특별법 제정 완료	'26.상	국회
▸ 특별법 시행	제정 후	중기부
2. 기업승계지원센터 및 플랫폼 시범 구축·운영		
▸ 기업승계 M&A 인식개선·수요발굴(간담회 등)	'26.1Q	중기부·기보 등
▸ 기업승계 M&A 플랫폼 구축	'26.상	중기부·기보
▸ 기업승계 M&A 플랫폼 시범 운영	'26.하	중기부·기보